

(사)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 공고 2024-01

2024년도 세종 빈일자리 채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는 세종시 뿌리산업 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해당기업 취업자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함으로써 뿌리산업의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주최 하에 세종 빈일자리 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04. 08.

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 회장

[붙임]

**세종 빈일자리 채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 (개요) '24.3.01. ~ ' 24.8.31 기간 중 세종지역 뿌리산업 사업장에 정규직(기한의 정함 없음)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3개월~12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 (목적)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사업」은 세종지역 뿌리산업 일자리 업종의 채용을 촉진하고 뿌리산업 취업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 (지원규모) 총 90명 * 1인당 최대 300만원
- (지원기간) 12개월(취업일 기준 3, 6, 12개월 차 근속 시 지원)

2 지원대상

- (기업요건) 세종지역 뿌리산업 대상기업
 - ① 세종시에 사업장이 있는 뿌리산업 기업으로,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 별첨1) 뿌리산업 해당기업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 별첨2) 우선지원 대상기업
 - ※ 세종시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인정 : ◎ 고용보험상 사업장 소재지,
◎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 근무 장소,
◎ 기타 사업장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서류 등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총괄카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혹은 정규직 채용(전환)일 기준 피보험자수 5인이상(증빙가능 서류 지참시 인정)
 - ※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으로 업종 판단

□ (참여자요건) 지원대상 근로자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 24.03.01. ~ ' 24.08.31 기간 중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음)으로
취업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 35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 파견,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

(해당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과 고용보험상 취득일(고용일)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

※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일과 근로계약서상 채용일이 다른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 각 1부 제출

② 기업규모 및 지원내용

기업규모	지원요건	지원수준
5인 이상	· (지원연령) 만 35세 이상	1인 최대 300만원 (3개월 근속시 100만원, 6개월 근속시 10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③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

※ 대상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인(고용보험 가입
이력 변경이 없어야 함) 근로자

④ 고용보험 가입(근로계약서상 채용일과 동일)

⑤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지원수준)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 12개월 차 10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제외)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채용시점 뿐만아니라 장려금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채용된 경우

※ 타 사업자의 고용보험 내역에 가입이 확인되는 자

② 인력공급업(7512), 경비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노무제공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경우

③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등에 재취업 하는 경우

※ 사업주가 동일하거나, 법인 대표가 동일한 경우

※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가 변경되었더라도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장소와 업무 등)한 경우

④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경우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⑥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인척 관계에 속한 자

3 지원절차

단계	수행방법	추진 주체
사업 공고 및 홍보	· (수행기관) 사업공고 및 사업홍보	수행기관
↓		
참여자 근속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3개월 이상 근속	참여자 ↑ 기업
↓		
참여신청 및 1차 지원금 지급 신청	· (참 여 자) 참여신청 및 1차 지원금 지급 신청 제출 · (수행기관) 서류 접수 및 적격여부 검토, 통보	참여자 ↑ 수행기관
↓		
지원금 지급	· (수행기관) (적격시) 지원금 지급	참여자 ↑ 기업
↓		
지원금 지급신청	· (참 여 자) 회차별 근속기간(6개월, 12개월) 도래시 지원금 지급(2차, 3차) 신청 · (수행기관) 서류 접수 및 적격여부 검토, 통보	참여자 ↑ 수행기관
↓		
지원금 지급	· (수행기관) (적격시) 지원금 지급	참여자 ↑ 기업

4 사업참여 및 방법

□ (신청시기)

- 참여자는 지원금을 3,6,1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3개월까지 사업참여 및 제1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 2차, 3차 지원금도 각 근속 기준일 다음날부터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단, 24년 12월 분에 대한 지원금은 수행기관의 안내에 따라 24년 12월 중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부지급 될 수 있음

※ 플러스 사업은 회계연도 단위 사업으로, 24년도 지원금은 24년도 회계연도 내에 모두 지급하여야 함

- (기한도과) 지원금 신청 기한이 도과한 경우, 수행기관은 참여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회차부터 지원을 중단 (지원금 부지급) 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 참여자는 (3개월 근속 시) 사업참여 및 제1차 지원금을 신청함(서식1)

- ❖ **(사업 참여 신청 제출서류)** ① 「세종 빈일자리 채용 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 (서식1) ② 참여자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서식 1-1, 1-2) ③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④ 사업장 총괄카드 1부(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⑤ 신분증 사본 1부
- ❖ **(제1차 지원금 제출서류)** ① 세종 빈일자리 채용 지원금 1차 신청서(서식1) ② 근속 증빙자료(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1부 ③ 본인명의 통장(인터넷 발급 포함) 사본 1부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발급) 1부

- 참여자는 (6개월 근속 시) 제2차 지원금을 신청함(서식2)

- **(제출서류)** ① 「세종 빈일자리 채용 지원금」 2차 신청서(서식2), ② 참여자 확인서(서식1-1) ③ 근속 증빙자료(근속 증빙자료(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1부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발급) 1부

- 참여자는 (12개월 근속 시) 제3차 지원금을 신청함(서식3)

- **(제출서류)** ① 「세종 빈일자리 채용 지원금」제3차 지급신청서(서식3),
② 참여자 확인서(서식1-1) ③ 근속 증빙자료(근속 증빙자료(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1부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발급) 1부

□ **(적격심사)** 참여자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를 발송

1) 적격시

-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지원금 지급(서식5)

2) 부적격시

-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지급 결정을 통보(서식5)

-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회차부터 지원을 중단(지원금 부지급)할 수 있음. 단, 참여자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10영업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신청방법)** 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 중소기업지원24 게시판 업로드

※ 서류 제출방법 : 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 중소기업지원24(www.ssea.kr) 게시판 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지원신청서 업로드

□ **(지원금 지급)**

- (지급기한)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

- (지급방법) 참여자 본인 계좌로 지급

5 부정수급

- (부정수급) 참여자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종 빈일자리 채용 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 일체
 - (부정수급 발생시)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지원금 지급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추후 관련 사업 재참여 제한 등
 - (부정수급 제재) 부정수급을 한 참여자는 수행기관의 반환명령에 응하여야 하며, 징수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플러스 사업 참여 제한
 -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함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00%

6 기타사항

- (예산범위 내 지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지원금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참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4년 「세종 빈일자리 채용 지원」 사업운영 지침을 따름

7 문의처

운영기관	담당자명	전화번호(직통)	이메일
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	김동현	010-2602-0356	kdhbiz@naver.com
	김윤정	010-2810-7484	sseabiz@naver.com

* 첨부. 뿌리산업 범위 및 인정분류 코드 1부.

* 첨부. 우선지원 대상기업 1부.

[별첨1] 뿌리산업 해당기업

구분	산업코드	업종명	구분	산업코드	업종명
주조	24131	주철관 제조업	용접산업	31111	강선 건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금형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소성가공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4221	등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22	도금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용접산업	24132	강관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2191	고무 패키징류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2249	기타가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22292	플라스틱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로봇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센서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산업지능형 SW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엔지니어링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별첨2]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B F H J N M Q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G I K R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